부르죠아법사회학의 반동적본질

최 일 복

현시기 자본주의세계에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부르죠아법사회학은 계급적모순과 대립이 보다 심각해지고 사회전반이 더욱더 파쑈화, 반동화되여가는 현대자본주의를 합리화하고 변호하는 반동적인 학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심각한 계급적모순을 가리우고 무마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지만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이 강화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과 자본 가계급사이의 모순은 해소될수 없습니다.》(《김정일전집》제5권 476폐지)

부르죠아법사회학의 반동적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을 합리화하고 독점자본가계급의 독재통치를 《민주주의》로 미화분식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의식발전을 저해하는 반동리론이라는데 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먼저 《경험과학》의 외피를 쓰고 독점자본 의 팽창과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온갖 사회적불평등 을 합리화하는 변호론이라는데 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은 우선 자본주의의 사회계급적모순을 까밝힌 맑스주의를 비난하면 서 자본주의법률제도를 교활하게 변호하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로동계급의 계급해방을 사명으로 하였던 맑스주의를 법사회학과 같은 준위에서 취급하면서 그것을 악의에 차서 비난하고있다. 그들은 법의 본질에대한 맑스주의적견해는 법의 발생학적견지에서 추상적으로만 정의된 일면적인것이라고비난하면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관념론적인 리론이라고 헐뜯고있다.

법에 대한 맑스주의적견해의 본질적내용은 그것이 해당 사회에서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독재의 수단이라는데 있다. 맑스는 력사적으로 존재한 여러 류형의 착취자국가의 법들을 원시사회에 존재하였던 사회적규범들과의 련관속에서 비교하고 그것을 유물변 중법적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분석연구하여 내놓음으로써 법이라는 사회적현상의 본질적측면 즉 그의 계급적성격을 예리하게 까밝혔다. 그런것으로 하여 맑스주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자본주의법률제도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법의 사회적기능에 대한 경험적연구의 결핍 이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주관적인 견해요 하면서 맑스주의적견해를 비난하고있다.

도이췰란드의 법사회학자 로트로이트나는 법의 본질에 대한 맑스의 견해에 대하여 《··· 법에 대한 개념정의가 법의 여러가지 가능한 기능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배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여러가지 모든 소유관계들을 유지한다는 하나의 기능에만 집착하는 것은 필경 특별히 다른 론리를 제창하는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비난하면서 맑스의 견해는 구체적인 사회생활속에서 실제적으로 기능하는 법의 다양한 측면들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규정한 관념론적인것이라고 시비중상하였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법에 대한 맑스주의적견해를 비난하는 한편 저들의 비과학 적인 궤변들을 가지고 반인민적인 자본주의법률제도를 미화분식하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법사회학의 연구대상은 법률의 실효성 즉 구체적인 사회생활속에서 법률의 작용 및 그 효과에 대하여 검증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저들의 법사회학을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한 과학》이라고 자화자찬하고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법률학에서와 같이 법의 발생 및 형성과정이나 법규범 그자체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추상적이며 리론적인 분석연구는 의의가 없다고 하면서 법률적현상에대한 학문적연구가 실제적으로 법률제도의 발전을 추동하는것으로 되려면 현실속에서 법의 작용과 그 효과문제를 보다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그러면서 법률현상에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법전속의 법》과 함께 반드시《행동속의 법 즉 살아있는 법》에 대한 연구로 될 때 의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고 횡설수설하고있다. 1990년대 이후에 와서는지어 법사회학의 연구대상의 범위를 《살아있는 법》으로부터 《이미지속의 법》(사람들의 표상속에 있는 법)으로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궤변까지도 제창되고있다.

《살아있는 법》이 법전속에 서술되여있는 법규들이 실제적인 사회생활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있는가 하는것이라면 《이미지속의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과정에 접하게 되는 여러 사회적현상들속에서 얻게 되는 법에 대한 《표상》을 의미하는데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여기에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뿐아니라 관습이나 도덕 그리고 사회단체나 회사내부의 규범들까지 포함시키고있다.

그들은 법사회학의 연구대상은 법규범 그자체인것이 아니라 련관된 사람들의 일정한 사회적행위들, 다시말하여 법규범의 실제적인 효력관계를 설명할수 있는 사회적사실들이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통계학적인 분석연구에 대하여 력설하고있다. 그러면 서 저들이 조작해낸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대 다수의 법률들이 사회성원들에 의하여 《접수(승인) 및 준수》되고있는듯이 기만하는 한편 법사회학이 《법률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요인들을 해명함으로써 자본주의법 률제도를 개선해나가는데 이바지하는듯이 설교하고있다.

이것은 법규범 그자체에 대한 연구분석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자본주의국가에 의하여 제정공포되고 폭력적강제력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고 자본주의법을 그 무슨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변호하려는 리론적기만극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법률제도는 독점자본가들의 탐욕적인 요구와 리익을 전사회적으로 보다 용의주도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방향에서 개악되여나갈뿐이다.

부르죠아법사회학은 또한 법률제도에 대한 《비판적연구》를 운운하면서 다른 법학조 류들보다도 더욱더 교활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제도를 옹호하고 합리화하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법학의 주요학파들로서는 신자연법학과 신분석법학 등이 있다.

신자연법학은 이른바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간의 리성을 《신적의사》의 구현으로 묘사하면서 자본주의실정법제도가 인간의 리성에 의하여 발견되는 《신적인 영구법》인 자연법질서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제창하는 현대자본주의법학의 한 조류이다. 신자연법학에서는 《인간리성의 빛》인 자연법을 밝히기 위한 리론적조작에 집착하

는것으로 하여 그 내용들이 매우 추상적이다.

신분석법학에서는 실증주의적방법론에 의거하여 자본주의국가에 의하여 조작공포되는 법규범들의 의미와 내용, 목적을 형식론리적으로 분석평가하며 중요하게는 자본주의법률제도의 권위성을 밝히려고 한다.

이처럼 현대부르죠아법학조류들은 《법의 리상》이나 자본주의국가의 현행 실정법규범들에 대한 형식론리적인 분석연구에 집중하고있다.

그러나 법사회학은 현행법규범들이 구체적인 사회관계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연구한다고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현대의 부르죠아법학조류들이 《법의 리상》이나 자본주 의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있다면 법사회학 은 현행법규범 그자체가 아니라 그의 《사회적실효성》을 밝혀낸다는것이다.

현대부르죠아법학조류들이 추상적이며 까다로운 리론적조작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대립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그에 대한 론의자체를 부인하고있다면 법사회학에서는 이른바 현존법률제도에 대한 《비판적연구》를 운운하면서 《객관적인 통계분석자료》에 의거하여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을 합리화하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 여러 계급과 계층이 존재한다는것을 《인정》 하고 매 계급과 계층에 따라서 《법의 실효성》이 서로 달리 표현되게 된다고 떠벌이고있 다. 그러면서 이자들은 사회에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는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비로소 산 생된것이 아니라 인류력사발전의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로동력의 분화 과정에 형성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법사회학이 자본주의사회의 법률적현상들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경험적인 비판연구》를 통하여 현존하는 법률제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이처럼 법사회학은 다른 법학조류들과는 달리 자본주의법실천에 대한 《경험적인 비판연구》라는 미명아래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제도를 합리화하고 변호하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의 반동적본질은 다음으로 현대자본주의국가의 로골적이며 파렴치한 억압정치, 략탈정치를 《민주주의》로 미화분식하는 기만론이라는데 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은 우선 《민주주의적인 사회체계》에 대한 기만적인 론의로 독점자 본의 억압정치, 독재통치를 《민주주의》로 미화분식하고있다.

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더욱더 횡포해지는 독점자본의 전횡은 근대부르죠아혁명시기에 자본가계급이 스스로 내세웠던 부르죠아민주주의원리를 엄중히 침해하게 되였다.

독점이 형성된 결과 자본가계급내부에서 독점자본가와 중소자본가들사이에 리해관계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였으며 자본가계급일반을 념두에 두고 전개되였던 고전적인 부르죠아민주주의의 원리는 자본주의사회현실과 배리되게 되였다. 전통적인 부르죠아민주주의원리에 기초하여서는 저들의 독단과 전횡을 합리화할수 없게 된 독점부르죠아지들은 새로운 변호론을 요구하게 되였다.

부르죠아법사회학은 독점자본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법과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구조기능주의》적견해에 기초하여 현대제국주의에서 독점자본의 독단과 전횡을 《민주주의》로 채색하려고 꾀하고있다. 법사회학자들은 《민주주의》를 곧 사회성원들과 정 부사이의 호상관계를 유지하여주는 사회적체계로 간주하면서 그에 관한 법사회학적견해 들을 조작류포시켰다.

《민주주의적인 사회체계》에 관한 법사회학적견해는 크게 세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로, 정부의 구성에 시민들의 참가를 보장할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체계》가 확립되여야 하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사회의 여러 집단의 요구를 반영할수 있는 다당제를 수립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정부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조직되여야 민주주의적성격을 띠게 된다고 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에 시민들을 참가시킬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그것은 둘째로, 정치체계에서 립법체계의 기능은 독자적이여야 한다는것이다. 다시말 하여 립법체계는 다른 정치체계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 별적인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복무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것은 셋째로, 서로 다른 가치를 체현하고있는 사회내의 여러 체계들로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할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규범들의 체계》를 완비하여야한다는것이다.

《민주주의적인 사회체계》에 대한 부르죠아법사회학의 론의들은 어느것이나 자본주의 현실을 외곡한 기만적인것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선거제도나 다당제도는 사람들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분화되여있고 계급적으로 대립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관계의 반영이며 독점자본의 독단과 전횡을 《민주주의》보자기로 감싸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의 선거법에는 여러가지 제한 및 보류조건들이 무수히 설정되여있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선거에서 제외되고있으며 선거의 전과정이 돈뿌리기경쟁으로 일관되여있어 일반 근로대중은 선거에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다. 한편 각이한계급과 계층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정당들사이에서도 독점자본의 리익을 대표하는 거대정당이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은 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거대정당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가리우고 근로인민대중을 회유기만하기 위하여 다당제의 간판을 내거는것이다. 독점자본가들은 다른 정당이 자기의 리익을 위협할 때에는 그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며 나중에는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해산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립법에 대한 불간섭이나 독자성이라는것은 언제한번 있어본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빈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자본주의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립법활동들을 좌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대독점자본가들이다. 막대한 재부를 거머쥐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저들의 독점적인 리윤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켜나가는 독점자본가계급은 의회의 립법활동에 깊숙이 개입하여 거기에서 채택공포되는 모든 법률들이 저들의 구미에 맞게 조작되도록 온갖 모략과 권모술수를 다하여 국회를 조종하고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있는 여러 사회적집단들이 평화롭게 공존할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규범들의 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는 부르죠아법사회학적견해도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자본주의발생초기에는 정치체계를 규제하는 공법과 경제체계(시장제도)를 규제하는 사법이 서로 독자성을 띠고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공법과 사법이 결합된 《복지법체계》라는 사회법체계가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개인들의 민주주의 적자유와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였다고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법체계가 발생하게 된 사회정치적 및 계급적요인을 의 도적으로 외곡하려는 서푼짜리 리론적조작극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법》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공황의 파국적인 후과로부터 독점자본을 보호하고 동시에 날로 앙양되는 근로대중의 혁명적진출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부르죠아반동정객들과 대독점자본가들이 공모결탁하여 꾸며낸 궁여지책의 산물이다. 현시 기 자본주의반동정객들과 독점자본가들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저들의 독점적지위가 위태로워지게 되자 《복지법》들에 여러가지 명목으로 제한 및 보류조건들을 내세워 폐지 하거나 제한하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은 또한 《법의 세계화》를 제창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지략탈 정책을 합리화하고있다.

지난 세기 90년대 후반기부터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법사회학분야에서 세계화에 대한 연구가 경제학이나 기타 다른 학문분야들에 비하여 뒤떨어져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인류력사는 언제나 발전된 나라와 지역의 법률제도가 뒤떨어진 나라와 지역으로 흘러들어간 력사》라고 하면서 현시기 《이전가능성을 가진 법률제도는 서방의 법률제도》라고 떠벌이고있다. 이와 함께 《초국가적인 조정기구들의 비공개적인 중재활동의 효률성》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전횡을합리화하고 그들의 특권적리윤추구를 변호하고있다.

법률제도의 《보편성과 그의 이전가능성》에 대한 법사회학적견해는 지난 시기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책동과 식민지지배의 력사를 합리화하고 현시기 해당 나라 인민들의 자주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수립된 법률제도를 서방식법률제도로 뜯어고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과렴치한 간섭책동을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국가들이 존재하며 국가마다 자기의 고유한 법률제도를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부합되는 《보편적인 법률제도》란 존재할수 없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고유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초국가적인 조정기구들의 비공개적인 중재활동의 효률성》에 대한 법사회학적견해도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지배책동을 합리화하는 궤변들이다.

오늘 국제적인 상품거래관계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제기되는 분쟁들을 공식적인 외국의 재판기관의 판결에 따라 해결하는것을 피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목적에서 중재에 의거하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다.

국제중재분야가 막대한 리익을 가져다주는것으로 하여 독점재벌들의 구미를 바싹 끌어당긴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점재벌들은 국제중재기구를 적은 투자를 통하여 막대한 자본을 긁어모을수 있는 《국제적기업》으로 여기고 저들의 리익에 맞게 조정하여 저들의 독점적리익을 세계적규모에서 보호하고 실현하려고 꾀하고있다.

현실적으로 국제적범위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들을 처리하는데 복무하는 많은 법률실무가들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양성된 법률전문가들이라고 한다. 독점재벌들은 세계적인 법률시장에 저들의 법률원리를 불어넣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법률대학과 법학부들에서 중재법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였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국제중재기구들에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양성된 법률전문가들로 차고넘치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법률전문가들을 《법률상인》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의활동의 《효률성》에 대하여 요란하게 선전하고있다. 그들은 국제적범위에서 법률실천활동의 효률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개별적인 국제적분쟁해결기구들을 점차적으로 축출하고지역적 및 국제적범위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들을 통일적으로 조정할수 있는 기구들을 창설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철저히 자기 나라 독점자본의 탐욕적인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국주의국가의 략탈적인 대외정책을 변호하기 위한것이다.

부르죠아법사회학의 반동적본질은 다음으로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의식발전을 저해하는 반동리론이라는데 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은 우선 사회주의사상과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면서 근 로인민대중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궤변들을 조작류포시키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법률제도의 발전방향과 그 법칙성을 연구한다는 미명아래지난 세기 80년대말 90년대초에 일어난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좌절을 마치도 《법률제도발전의 합법칙적인 현상》인것처럼 외곡하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고대사회의 법률제도는 감금과 사형과 같은 육체적고통을 주는 억압적인 법규범들로 이루어져있었지만 현대사회의 법률제도는 당사자들사이의 쌍방적인 합의에 기초한 보상적인 법규범들로 이루어져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이자들은 현대사회에서도 가혹한 형벌들을 법체계내에 내포하고있는 국가들은 전제주의적인독재국가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히틀러파쑈독재제도와 사회주의제도를 포함시키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발전의 력사적이며 객관적인 사실들을 외곡한 기만적인것이며 사회 주의를 비방중상하기 위한 모략에 불과하다.

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해당 사회에서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정치경제적지배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복무하는 행동준칙의 총체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법은 그 발 생초기부터 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형사법적규범들과 함께 민사법적인 규범들 을 함께 내포하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 노예소유자국가의 하나였던 고조선의 《범금8조》의 구성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고조선의 《범금8조》는 8개의 조문으로 되여있었으나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는것은 3개의 조문뿐이다.

《범금8조》의 3개조문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로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처를 입힌자는 곡물로써 보상하여야 한다. 3.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자는 그 물 건의 주인의 노예로 되여야 한다. 만약 속죄하려면 50만의 돈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법은 그 발생초기부터 형사적인 탄압규범과 함께 보상적인 민사법규범이 함께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대시기 량강류역에 존재하였던 노예소유자국가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과 로마의 《12동판법》을 비롯하여 대표적 인 성문법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자본주의국가의 법들에도 민사적인 보상법규범들과 함께 형사적인 탄압규범들이 있다. 특히 자본주의사회를 비롯한 착취사회의 법들은 어느것을 막론하고 지배계급의 지배질서를 권력적으로 담보해주는 가혹한 형사적인 탄압규범들이 법체계에서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민사적인 보상법규범들도 철저히 착취계급의 리익에 부합되게 설정되여있다.

히틀러파쑈독재제도와 사회주의제도를 동일시하는 법사회학적견해도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이다.

사실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가혹한 형벌을 합법화하고있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 중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는데 복무하는 자본주의법을 비롯한 착취계급사회법 률제도의 고유한 특징이다.

착취계급은 인민대중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떠나서 저들의 지배질서를 순간도 유지할수 없다. 특히 제국주의반동들은 저들의 정치경제적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가혹한 형사적탄압법들을 마구 조작하여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무참하게 유린말살하고있으며 지어는 초보적인 법적절차도 거치지 않고 혁명가들과 진보적인사들을 처형학살하고있다. 히틀러파쑈독재제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극반동화가 가져온 필연적인 귀결이였다. 다시말하여 히틀러파쑈독재제도는 자본주의법률제도가 잉태하고 뱉아놓은 것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제도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

부르죠아법사회학은 또한 《사회적련대》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의 식발전을 저해하고 그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는데 복무하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은 사적소유제도가 발달한 자본주의사회는 사람들사이의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질수 있는 사회이며 여기에서 사회적련대는 중요하게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떠벌이고있다.

이자들은 《력학적인 사회로부터 유기적인 사회에로 발전》하는것은 인류력사발전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력학적인 사회에서 법은 사람들사이의 기계적인 단합을 위한 수단이 지만 유기적인 사회에서 법은 사람들사이의 목적의식적인 사회적련합의 수단이라고 주장 하고있다. 그들은 저들의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발전된 사회에서는 법규범들 이 개인과 사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성원들사이의 쌍무적인 계약을 반영하여 제정된다고 떠벌이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법률제도는 다양한 리익집단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사이의 사회적련대를 실현하는데 복무하게 되며 사회적통합의 기능이 자본 주의법의 중요한 기능으로 된다고 력설하고있다.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사적소유제도를 정당화하고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온갖 계급적모순과 대립을 이른바 사회적다양성으로 미화분식하는 한편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의식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적사적소유제도의 발달이 사회적련대의 전제조건으로 된다는 부르죠아법사 회학자들의 주장은 자본주의사회의 고질적인 병집의 근원을 외곡하는 궤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모순과 불평등은 바로 자본주의적사적소유제도가 낳은 필연 적인 결과이다.

자본주의적사적소유제도는 사적소유자들사이의 무제한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불러일

으키게 되며 불피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인민대중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법사회학자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련대》에 대하 여 애써 립증하려고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의식발전을 저해하고 그들스스로가 독 점자본의 예속의 올가미를 걸머지도록 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르죠아법사회학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리론이다.

우리는 현대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는 부르죠아법사회학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며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법사회학, 실효성